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3월 6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3월 6일

3.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주요골자

- 기금조성 :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3년간의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 적립)
- 기금운용·관리 : 재난관리기금계좌 설치관리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

- 기금용도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
 -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 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 재난발생(우려)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 재난발생(우려)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 안전진단, 이주소요 비용에 대하여 융자 가능
토록 규정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재난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 및 운용 관리를 위한 도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 활동과 재해발생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 재원으로는 3년간의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입금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한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